

[문제 - 1]

I. 설문(1)에 대하여

1. 디자인의 유사 판단의 전제

① 디자인은 구체적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형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② 甲의 등록디자인 A는 “건축 배관용 슬리브관”에 관한 물품이며, 乙의 등록디자인 B 또한 같은 물품에 대해 출원하였으므로, 양 물품은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양 디자인의 형태의 유사 여부를 검토한다.

2. 형태의 유사 판단기준

(1) 일반적인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형상을 포함한 경우

①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② 다만,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등록디자인 A와 B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

(1)	乙 주장의 타당성
	<p>① ‘건축 배관용 슬리브’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뚜기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으로 볼 수 없다. ② 따라서, 乙의 주장은 부당하다.</p>
(2)	양 디자인의 공통점 및 차이점
	<p>① (공통점) 양 디자인 모두 공통적으로 오뚜기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② (차이점) 몸체부의 외주면과 상면의 형상 및 모양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p>
(3)	소결
	<p>① 비록, 양 디자인에 상술한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자세히 관찰할 때만 볼 수 있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② 양 디자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뚜기 형상이 보는 사람의 주목을 가장 잘 끄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p>
4.	설문의 해결
	<p>乙이 주장하는 유사 판단의 법리는 부당하며, 등록디자인 A와 등록디자인 B는 서로 유사하다.</p>
II.	설문(2)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p>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法121①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p>

	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乙의 등록디자인 B가 甲의 등록디자인 A와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무효사유를 검토한다.
2. 甲의 등록디자인 A의 지위	
① 甲의 등록디자인 A는 등록디자인 B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되었으므로, 선출원의 지위 및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의 지위를 갖는다.	
② 따라서, 乙의 등록디자인에는 法33①,② 및 法46①의 무효사유가 문제될 수 있다.	
3. 신규성 및 창작성 위반의 무효사유	
(1) 신규성 및 창작성 의미	
i) 출원 전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으며, ii) 출원 전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또는 주지형태에 의해 용이창작 가능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2) 甲의 등록디자인 A의 지위	
甲의 등록디자인 A는 등록되어 공개되었으므로, 法33①2에서 규정하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3) 신규성 위반 여부	
乙의 등록디자인 B는, 상술한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 A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法33①3호 위반의 무효사유가 존재할 것이다.	
(4) 창작성 위반 여부	
만약, 乙의 등록디자인 B가 등록디자인 A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등록디자인 A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창작 수준이라 보이므로, 法33② 위반의 무효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4. 선출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	
(1) 선출원주의 의미	
	i) 동일·유사한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ii) 중복권리 등록을 배제하고 권리 안정성 도모하기 위함이다.
(2) 甲의 등록디자인 A의 지위	
	甲의 등록디자인 A는 乙의 출원보다 앞서 출원되었으며, 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3)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	
	상술한 바와 같이, 등록디자인 A와 등록디자인 B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후출원된 등록디자인 B에는 法46① 위반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
5. 설문의 해결	
	甲은 등록디자인 B에 法33①3 및 法46①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法33②의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설문(3)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침해소송 법원이 무효심결 확정 전에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에 따라 침해소송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무효심결 확정 전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침해소송 법원의 본안판단 가부 (法152②)	
(1) 문제점	

	<p>침해소송 계속 중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는바,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침해 여부에 관한 본안판단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p>
(2) 본안판단 가부	
	<p>法152②에서는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소송절차의 중지를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으므로, 침해소송 법원은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을 진행할 수 있다.</p>
3. 침해 여부 판단	
(1) 침해요건 검토	
	<p>① i)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ii) 제3자에게 정당권원이 없으며, iii) 보호범위 내에서 iv)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직접침해가 성립한다.</p>
	<p>② 사안의 경우, 甲의 등록디자인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양 디자인이 유사하고, 乙이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乙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적극적 효력의 행사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침해를 부정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p>
(2) 판례의 태도	
	<p>최근 대법원은 i)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ii)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고, iii)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p>

	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判例가 설명하는 법리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선원이 우선함을 근간으로 구축되어 온 지식재산권법의 기본원칙 즉 ‘선원우위의 원칙(priority principle)’과 국제적 입법례에 부합하므로, 선출원 등록권리와 관계에서는 후출원 등록권리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선출원 등록권리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는 判例의 태도는 타당하다.
(4) 사안의 경우	
	결국,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침해소송의 법원은 등록디자인 B의 등록디자인 A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끝 -
	[문제 - 2]
I. 설문(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判例의 법리에 비추어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검토한다.
2. 디자인의 유사 판단의 전제	
	① 디자인은 구체적 물품에 성립된 형태이므로,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형태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② 甲의 등록디자인의 물품은 “작업복 상의”이며, 乙이 판매하고 있는 물품도 “작업복 상의”에 관한 것이므로, 양 물품은 동일하다.
	③ 이하에서는, 양 디자인의 형태의 유사 여부를 검토한다.
3. 형태의 유사 판단기준	

(1) 일반적인 판단기준	<p>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p>
(2)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는 경우	<p>判例는 i) 디자인권은 신규성 있는 디자인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해야 하고, ii) 따라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그 외 특징적인 부분이 비유사한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p>
(3) 요부 관찰의 법리	<p>判例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 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가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p>
(4) 사안의 경우	<p>① (공통점) 등록디자인과 실시디자인은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등에서 대부분 유사하다.</p> <p>② (공통되는 부분이 공지 부분에 해당하는지) 다만, 위와 같은 공통되는 부분은 甲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유사판단 시 이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등록디자인의 요부) 한편, 등록디자인의 “지퍼 형상의 가슴부위 절개선”은 i) 일반적인 작업복 앞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며,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이므로 요부에 해당한다.</p>
	<p>④ (소결) 양 디자인은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비유사하다.</p>
<p>4.</p>	<p>설문의 해결</p>
	<p>甲의 등록디자인과 乙의 실시디자인은 비유사하다.</p>
<p>II.</p>	<p>설문(2)에 대하여</p>
<p>1.</p>	<p>문제의 소재</p>
	<p>유사판단의 법리에 관한 심사기준 및 判例의 태도를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p>
<p>2.</p>	<p>디자인의 유사판단 법리</p>
<p>(1)</p>	<p>유사 판단 시 형태의 취급</p>
	<p>심사기준은 i) 형상, 모양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유사디자인으로 보며, ii)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판단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p>
<p>(2)</p>	<p>기본적인 색채 구도가 동일한 경우</p> <p>判例는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p>

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3. 사안의 경우

① (공통점) 양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6개의 색채로 된 띠 모양의 위치 및 면적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② (차이점) 甲의 등록디자인은 6개의 색채로 된 띠가 빨간색 및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것에 반하여, 乙의 디자인은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결론) 양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 동일한바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설문의 해결

甲과 乙의 작업모 디자인은 유사하다. - 끝 -

[문제 - 3]

I. 설문(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권리범위확인심판 계속 중 등록디자인이 무효심결로 소멸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유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관례 태도에 비추어 검토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의의 및 취지	
	i)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으로(法122), ii) 소송절차에 앞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침해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4. 등록디자인의 무효심결 확정 후 확인의 이익 유무	
	判例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 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고 판시하였다.
5. 사안의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계속 중 등록디자인 A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이후의 권리범위확인 이익은 없어지며, 심결은 각하될 것이다.
II. 설문(2)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등록디자인 A가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 A의 권리범위가 부정될 수 있을지 判例 태도에 비추어 검토한다.
2. 무효의 항변에 관하여	

(1)	등록디자인에 신규성 위반의 무효사유 분명한 경우
	<p>判例는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p>
(2)	등록디자인에 창작성 위반의 무효사유 분명한 경우
	<p>判例는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공지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p>
3.	설문의 해결
	<p>등록디자인 A가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p>
Ⅲ.	설문(3)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p>乙의 디자인 B가 등록디자인 A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 또는 주지형태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을 경우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 A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지 검토한다.</p>
2.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에 관하여
	<p>① 判例는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p>

	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② 또한, 判例는 등록의장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판시한다.
3.	설문의 해결
	乙의 디자인 B가 등록디자인 A의 출원 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의 형상·모양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거나,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다면, 등록디자인 A와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IV.	설문(4)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乙의 주장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의 기초가 되는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이 허용될 수 있을지 검토한다.
2.	乙의 항변의 종류
	乙은 자신이 실시 디자인 B가 甲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 A'와 동일·유사하거나 용이하게 창작 가능한 것이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에 해당한다.

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허용 여부
	<p>判例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으로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허용하고 있다.</p>
4.	乙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허용될지
(1)	문제점
	<p>디자인 A'은 온라인 판매 업체에 이메일로 송부되어 공지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甲은 이에 기초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이에 기반하여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이 가능한지 문제된다.</p>
(2)	디자인 A'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p>判例는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므로, 이와 같이 신규성상실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등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p>
(3)	제3자와의 형평성이 문제 될지
	<p>判例는 디자인보호법은 제3자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法36②에서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신규성상실예외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히지 않으며 제3자와의</p>

	이익균형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판시한다.
(4) 검토	
	비록, i) 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도 신규성상실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개연성이 높을 수 있으나, 法 36②에서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였고, ii)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대상으로 하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대상과 공지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대비대상으로 하는 신규성상실예외 규정은 대비대상 및 판단내용을 달리하지만, 신규성상실예외 규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공지디자인이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5. 설문의 해결	
	判例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디자인 B가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끝 -
	[문제 - 4]
1. 설문(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등록디자인 A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때 창작자 허위 기재 표시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2. 승계인에 의한 출원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① 法3①에 따르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사안의 경우, 乙은 창작자인 丙으로부터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했으므로, 法3①에 따라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소결	
	출원인은 乙로 기재되어 있으나, 乙은 디자인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출원된 것으로 무효사유 존재하지 않는다.
3. 창작자 허위 기재 표시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1) 판례의 태도	
	① 判例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디자인을 창작한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② 생각건대, 창작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보면, 判例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사안의 경우	
	判例에 따르면, 乙이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르게 기재한 사유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설문의 해결	
	결국, 디자인 A에 관한 정당한 승계인에 해당하는 乙에 의해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II. 설문(2)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乙과 丙이 디자인권을 공유할 때,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고,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및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시 현물분할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2. 디자인권 공유의 법적 성질	
	① 判例는 특허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 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특허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특허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등의 명문 규정도 없는 이상, 특허법의 다른 규정이나 특허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특허권의 공유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권의 공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다.
	② 따라서, 乙과 丙이 등록디자인을 공유하는 경우,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이 디자인권의 공유에도 적용된다.
3.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 가부	
(1) 판례의 태도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등에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

	에 위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사안의 경우	판례의 법리는 디자인보호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乙과 丙의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4. 현물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1) 판례의 태도	특허권은 발명실시에 대한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사안의 경우	乙과 丙 사이에 등록디자인 A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권의 성질 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설문의 해결	
	i) 乙과 丙이 공유하는 디자인권에는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며, ii)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iii) 이 경우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 끝 -
	- 이하 여백 -